



일본 정부, 중소기업지원법 개혁

최근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이나 경영혁신지원 등과 관련한 3개 지원법을 통합하여 '중소기업 新사업활동 촉진법'을 제정하였음. 향후 중소기업지원법의 기능강화를 계기로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혁신이 한층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.

- 일본 정부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최근의 경제 및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 4월 기존의 3개 중소기업지원법을 통합하여 '중소기업 新사업활동 촉진법'을 제정하였음.
 - 그동안 일본에서는 ① 중소기업 경영혁신 지원법, ②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, ③ 新사업 창출 촉진법 등의 3개 법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지원책이 실시되어 왔는데, 기능이 중복되는 조치가 많아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.
- '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(이하 중소창조법)'은 창업 5년 미만의 제조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5년에 10년간의 한시법으로서 제정되었음.
 - 중소창조법에 따라 유망 사업계획으로 인정받은 중소기업은 채무보증 등에 있어 우대를 받았음.
 - 일본 정부는 1997년 중소창조법 개정시 '천사(angel)세제' 제도를 도입하여 벤처기업 투자자에게는 주식양도이익의 감면 등 세제상 우대조치를 적용하였으며, 2003년에는 벤처기업 투자액을 다른 주식양도이익으로부터 감면받을 수 있는 조치를 추가한 바 있음.
- 지난 1999년 제정된 '新사업 창출 촉진법'에서는 사업계획이 승인된 창업 5년 미만의 사업자에게 대출보증상의 특례조치나 기술혁신에 대한 보조금지급 등의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음.



- 또한 2003년 동 법에 명시된 기업설립에 대한 최저자본금규제의 특례조치에 의해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1천만엔의 자본금(유한회사는 300만엔) 기준을 5년간 유예한 바 있음.

■ 1999년 시행된 ‘중소기업 경영혁신 지원법’은 新상품의 개발,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 등에 관한 경영혁신 계획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저리대출, 경비보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■ 한편 통합 신법인 ‘중소기업 新사업활동 촉진법’은 ‘중소기업 경영혁신 지원법’을 개정한 후 중소기업지원관련 다른 2개 법의 기능을 통합한 것으로서 다음의 4가지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.

- ① 창업의 촉진 :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이나 창업 5년 이내의 사업자 등에 대해 중소기업신용보험이나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의 특례를 통해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최저자본금 규제의 특례를 계속 유지함.
- ② 경영혁신의 촉진 :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활동을 실시하는 비즈니스 계획을 책정해 경영향상을 도모할 경우 자금조달 및 필요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지원함.
- ③ 新사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반 정비 : 국가 등의 연구개발보조금에 의해 개발한 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활동의 지원 등 新사업활동에 필요한 경영자문 등을 지원함.
- ④ 신제휴의 촉진 : 이번 통합법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으로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, 중견·대기업, 대학·연구기관 등과 제휴해 高부가가치의 제품·서비스를 창출하는 새로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휴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및 설비투자에 대한 감세 조치 등을 실시함.

■ 이와 같은 중소기업지원법의 재편과 이를 통한 기능강화 노력은 향후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혁신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.

-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중소기업지원책이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,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중소기업지원법 통합이 지원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효과를 지속적으로 검증·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.